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가단248320 판결 [주식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강원도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울

담당변호사 김광영

피고1. A

2. B

3. C

4. D

5. E

피고 1, 2, 3,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윤희

변론 종결2023. 6. 1.

판결 선고2023. 6. 29.

주 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F 발행의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식 389,636주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33,138,78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기 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70%는 피고 A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F 발행의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식 389,636주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33,138,78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F 발행의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식 389,636주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33,138,780원 및 그 중 52,878,330원에 대해서는 2018. 9. 1.부터, 52,878,330원에 대해서는 2018. 9. 29.부터, 75,794,040원에 대해서는 2018. 11. 1.부터, 75,794,040원에 대해서는 2018. 12. 1.부터, 75,794,040원에 대해서는 2018.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강원도 내의 공공주택 및 공공기관 시설 건설, 사업단지 개발, 택지 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이다. 피고 A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요 주주이고, 피고 B, C, D, E는 F의 주요 주주들이다. F은 가구 도·소매업, 가구제조업, 전자상거래업, 인테리어업, 관광호텔업, 관광호텔의 경영에 부수되는 부수시설의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 운영의 G 리조트 내의 시내면세점 및 명품매장 사업 등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F 사이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원고는 2015. 1. 22. F이 발행하는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882,928주(이하 '이 사건 우선주'라 한다)를 1주당 855원, 총 754,903,440원 상당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F 및 F의 주요 주주이거나 주요 주주로 보통주 취득이 예정된 이해관계인들인 피고들과 체결하고, 이후 현물출자를 완료하여 이 사건 우선주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피고들을 제외한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은 4.58%였다.

제2조(정의)

1. 본 계약에서 '이해관계인(피고들)'이라 함은 F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아래에 기재된 자를 말한다.

성명: B, A, C, D, E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생략)

2. 제1항에서 정의된 '이해관계인(피고들)'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본 계약상 F의 의무 이행을 연대하여 보증한다.

제4조(주식의 인수)

1. F은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한다.

(1) 기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2,840,000주(액면가 500원)

(2)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1,169,590주(액면가 500원)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882,928주(액면가 500원)

(3) 1주의 발행가액: 855원(액면가 500원)

(4) 발행할 주식의 총액: 1,754,902,890원

2. 제1항의 발행할 주식 중 원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으로 본조 제4항의 내용에 따른 현물출자 방법을 통해 동 주식을 인수한다.

(1) 인수할 주식의 총수: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882,928주

(2) 일주의 인수가액: 855원

(3) 인수할 주식의 총액: 754,903,440원

(4) 납입기일: 2015. 1. 22.

3. 제1항의 발행할 주식 중 F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으로 동 주식을 발행한다.

(1) 인수할 주식의 총수: 기명식 보통주 1,169,590주

(2) 일주의 인수가액: 855원

(3) 인수할 주식의 총액: 999,999,450원

(4) 1차(584,795주) 납입기일 : 2014. 12. 17.

(5) 2차(584,795주) 납입기일: 2015. 1. 15.

제5조(신주의 성질)

1. 신주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과 상환에 관하여 본 장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권과 전환권이 부여되며 의결권이 존재하는 우선주이다.

제6조(배당금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주주는 F의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이익의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게 되며, (중략)

4. 신주의 최저이익배당율은 영업연도별로 액면가의 12%이다.

제8조(청산 등에 관한 사항)

1. F이 청산되어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신주의 주주는 제4조 제2항의 인수금액 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 건 신주의 발행일로부터 청산 등의 거래 완결일까지 연 복리 19%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중략)

제9조(상환에 관한 사항)

원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F에게 본 조에 따라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F은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1. 상환금액 : 최초 신주의 인수가액과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복리 7%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지급된 배당금은 공제한다.

2. 상환청구기간 : 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날까지이다.

제10조(전환에 관한 사항)

1. 신주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그 기간 동안 신주의 주주에 의한 전환청구가 있게 되면 그 10년이 경과한 날 또는 전환청구가 있는 날부터 보통주로 전환된다.

10. 전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정함에 따른다.

제11조(기타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신주는 보통주수를 기준으로 다른 보통주와 동일하게 '1주 1의결권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제10조에 의하여 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보통주의 주식수대로 '1주 1의결권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19조(보고 및 자료제출)

F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거나 그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원고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1주 이내에 원고에게 이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정부 및 준정부기관에 의한 행정적 제재

10. 기타 투자자가 요청하는 사항

제20조(회계 및 업무감사)

1. F은 본 계약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이후 당해 연도부터 본 사업에 대한 별도의 분리회계를 실시하여 사업비 관리 및 사업운영을 하며, 원고가 지정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인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원고는 F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의 수행에 대해 원고의 입장에서 선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신의 직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F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 및 기타 원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F 및 이해관계인(피고들)은 감사 자료의 제공 등 감사의 실시에 따른 원고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고는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F 또는 이해관계인(피고들)이 본 계약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F 또는 이해관계인(피고들)이 사실과 다르게 본 계약 제12조와 제13조의 진술과 보증을 행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3) F 또는 이해관계인(피고들)이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를 받아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인회계사의 F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

- (7) F 또는 이해관계인(피고들)이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자료제출의무, 보고의무, 협의절차, 동의절차 준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하고 원고의 서면 요청이 있은 후 10 영업일 이내에 이러한 불이행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 (8) F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어 F의 영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이러한 사정이 발생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 (9) 청산, 파산, 회생절차 또는 부실징후기업으로의 인정 등의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제24조(주식매수청구권)

-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그 선택으로 제21조 제1항에 의한 해지에 갈음하여 F 및/또는 이해관계인(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보유하는 F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F 및/또는 이해관계인(피고들)은 이를 매수(본 항에서 매수는 상환 또는 유상감자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본 조 제1항에 의한 주식매수요구는 F 및/또는 이해관계인(피고들)에 대하여 매수대상 주식의 가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F 및/또는 이해관계인(피고들)에 매수요구서가 도달한 시점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30일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F 및/또는 이해관계인(피고들)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본 조 제1항에 의한 주식매수에 있어서 매매가격은 원고가 투자한 원금과 이에 대하여 신주인수대금 납입일로부터 본 조 제2항에 의한 매매 이행일까지 연 복리 19%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 지급된 배당금은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다. 원고의 전환권 행사

원고와 F 및 주식회사 G는 2016. 12. 29. 원고가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상호 해지하고, 대신 원고가 F에게 잔여 임대료로 610,213,614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면서 이와 동시에 이 사건 우선주 전부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합의서(이하 위 합의서를 '이 사건 전환합의서'라 하고, 그 합의를 '이 사건 전환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원고는 F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 882,928주를 취득하였다(이하 보통주로 전환된 주식을 '이 사건

보통주'라 한다). 이 사건 전환합의서 중 이 사건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권리와 의무)

3. 원고는 본 조 제1항에 따라 잔여임대료 납일 즉시 2015년 1월 22.일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서 제10조에 의거하여 기 인수한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882,928주(액면가 500원, 발행가855원, 총액 754,903,440원)를 기명식 보통주 882,928주로 1:1 전환 요청한다.

제3조(손해배상)

원고와 F이 2015년 1월 22.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해지와 신주인수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내용은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제8조(기타사항)

1. 본 합의서 제2조 제3항에 따라 원고와 F이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서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신주인수계약서의 우선주 관련 조항(배당금, 상환관련조항 등)은 실효되나,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라. 원고의 F 주식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1) 원고는 F의 원활하지 않은 경영 상황, 감사원의 주식 처분 통보 등의 사정으로 2017. 12. 29. F 및 피고 A, B과 사이에, "피고 A이 원고 소유의 F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 450,000주를 2018. 3.경까지 양수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위 주식양수도가 그 합의서에 따라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8. 4. 25. F 및 피고 A, B, C, E와 사이에, "피고 A이 F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 450,000주를 2018. 8. 31.까지 양수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이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의 추가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추가 합의서에 기초하여 2018. 4. 26. F 및 피고 A, B, C, E와 사이에, "피고 A이 2018. 8. 31.까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F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 450,000주를 1주당 855원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 384,750,000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이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 A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보통주 450,000주를

이전하였다.

3) 원고는 2018. 7. 31.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F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 432,928주 전부를 1주당 855원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 370,153,440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되, 위 매매대금을 6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2차 주식양수도계약 중 이 사건 관련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양수도대금 납입)

① 피고 A은 F이 발행하고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대상주식을 양수하기로 하고, 양수도대금을 원고 명의의 지정계좌에 아래와 같이 분할 납입한다.

납입기일	2018. 7. 31.	2018. 8. 31.	2018. 9. 28.	2018. 10. 31.	2018. 11. 30.	2018. 12. 28.	370,153,440
납입금액	37,014,660	52,878,330	52,878,330	75,794,040	75,794,040	75,794,040	

제3조(권리이전)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양수도대금을 전액 받음과 동시에 피고 A에게 대상주식의 모든 권리를 이전하고, F에 주식양도 통지 및 명의개서 절차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② 피고 A이 2018. 12. 28.까지 양수도대금을 전액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즉시 해제 또는 해지된다. 단 해제일은 피고 A이 원고로부터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 한다.

③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도 피고 A이 납입한 양수도대금에 해당하는 주식은 양수도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고는 해당 주식의 모든 권리를 피고 A에게 이전하고, F에 주식양도 통지 및 명의개서 절차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피고 A이 이 사건 2차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2018. 7. 31. 1차 납입분 37,014,66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잔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12. 28. 위 1차 납입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보통주 43,292주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 A에게 이전하였다.

5) 원고는 현재 피고 회사 발행의 이 사건 보통주 389,636주를 원고의 증권계좌에 보유하고 있다.

마. F의 파산선고

F은 2022. 7. 25. 서울회생법원 2022하합100191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원고는 파산선고를 이유로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우선주에 대해 이 사건 전환합의에 따라 전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보통주를 취득하였고, 보통주로 전환된 이후에도 이 사건 전환합의서 제8조에 따라 여전히 보통주에 대한 이 사건 투자계약 제24조의 주식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F은 원고에게 자료,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투자계약 제19조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제20조의 회계 및 업무감사 의무를 각 위반하였고,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제21조 제1항 제1, 7, 9호의 해지사유에 따라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F에게 이 사건 보통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이 사건 투자계약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F의 위 보통주 매수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또는 이해관계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통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F 및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보통주 389,636주 전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하여 원고와 F 또는 피고들 사이에는 이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들은 F의 연대보증인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상대방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 제24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청구로서 원고가 투자한 1주당 원금 855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매수대금 333,138,780원(= 389,636주 × 8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투자계약 제24조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한 것은 상환전환우선주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보통주로 전환 후에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위 제24조가 이

사건 보통주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F과 달리 이 사건 전환합의서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통주로 전환한 이후에는 위 조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하거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투자계약 제24조에서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F 및/또는 이해관계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F과 이 사건 전환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보통주 882,928주를 취득한 사실, 이 사건 전환합의서 제8조 제1항에서 이 사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이 사건 투자계약의 우선주 관련 조항(배당금, 상환관련 조항 등)은 실효되나,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 제24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인 피고들에게 여전히 F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식매수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청구하거나 직접 이 사건 보통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주식매수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다른 점을 더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투자계약은 원고로부터의 투자금 유치를 위해 원고 이외의 자에게 보통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확충하면서 그 보통주를 취득하는 주주 및 기존의 주주와는 달리 원고에게 높은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의 상환권과 보통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이 사건 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F의 주요 주주이거나 주요 주주가 될 예정인 피고들을 이해관계인으로 참여시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원고에게 매우 유리하고 F과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들 및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한 계약이다. 이 사건 전환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이후 이 사건 전환합의서 제8조 제1항에서 "이 사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이 사건 투자계약의 우선주 관련 조항(배당금, 상환관련 조항 등)은 실효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부분은 그 객관적인 문언, 의미, 내용 등과 함께 이

사건 투자계약의 전체적인 내용, 피고들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소액주주 등의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②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환합의서 제8조 제1항은 이 사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이후 이 사건 투자계약의 우선주 관련 조항(배당금, 상환관련 조항 등)은 실효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와 위 제8조 제1항의 규정 방식,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괄호 부분 안의 배당금, 상환관련 조항 등이라고 기재한 것은 이 사건 우선주의 특성 중 상환권 관련된 대표적인 부분만을 예시적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서, 그 이외 보통주와 비교할 때 이 사건 투자계약 중 이 사건 우선주 주주에게만 특별한 지위 등을 인정하여 보통주 주주를 차별하고 있는 조항을 실효시키고 그와 무관한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투자계약 제21조 제1항 제1, 7, 9호를 비롯한 각 호의 해지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투자계약 제24조 제1항에서는 투자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지에 갈음하여 F 및/또는 이해관계인 피고들에게 원고 보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 원고가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F의 사업 성패에 따른 위험성을 감수하여야 함에도 그 투자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높은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이외에 위와 같은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F 및/또는 이해관계인 피고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까지 보장하는 조항이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는 위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원고도 투자자인 주주로서 F의 사업 성패에 따른 위험성을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하는 점, 위 주식매수청구권은 높은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과 함께 원고의 이 사건 우선주 투자금의 회수 내지 상환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제24조 제1항은 이 사건 우선주를 취득한 이후 보통주로 전환되기 이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우선주 투자금 회수 내지 상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F의 사업 성패에 따른 위험성을 감수하는 투자자로 보통주를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주요 주주이면서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우선주를 취득하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인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피고들은 자신들의 보통주와 달리 이 사건 우선주가 상환권, 전환권 등이 인정되는 특별한 유형의 주식인 것을 알고도 투자금 유치를 위해 이 사건 우선주 발행에 동의하고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이후에는 원고의 보유 주식도 자신들의 주식과 동일한 보통주이고, 이해관계인으로서 부담하게 되는 연대보증책임 등도 소멸하게 된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전환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전환합의서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고나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3. 피고 A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 보유의 이 사건 보통주 389,636주에 대한 매매대금 333,138,780원(= 총 주식매매대금 370,153,440원 - 1차 납입분 37,014,6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2차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에 대하여 각 납입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74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2차 주식양수도계약 제3조에서 원고는 피고 A로부터 양수도대금을 전액 받음과 동시에 피고 A에게 대상주식의 모든 권리를 이전하고, F에 주식양도 통지 및 명의개서 절차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A에게 대상주식의 모든 권리를 이전하거나 F에 주식양도 통지 및 명의개서 절차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거나 계속적인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 보유의 이 사건 보통주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지지 않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 A은, F이 채무초과로 파산선고를 받아 이 사건 보통주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2022. 10. 12.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2차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원고 보유의 이 사건 보통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A은 F의 경영이 순탄치 아니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통주를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2차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A은 F의 대표이사로서 F의 파산 등 그 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③ 원고는 2022. 5. 25. 피고 A에게 F에 관한 감사보고서 제출 독촉 과정에서 피고 A로부터 F의 파산에 관한 것을 확인했고, 같은 날 F에게 감사원 감사에 따른 F의 주식 전량 매각 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조속히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

재판장판사김판사

판사이판사

판사박판사